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09. 1. 21

제안자 : 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안경위

2009. 1. 21 제14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김영신의원 외 6인의
동의로 발의되어 상정·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제안이유

2008.7.3 일부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900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723호)가 2008.12.11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기준에 맞게 이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수를 5급상당 별정직 2명과 지방행정
주사 2명으로 함(안 제4조제1항)

4.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

5. 개정조례(안) : 별첨

6.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7.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후단 내용 중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을 “5급상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조례 제679호)	개정안
<p>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되, 전문위원은 <u>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u> 별정직 2명과 지방행정주사 2명으로 보한다</p> <p>②, ③(생략)</p>	<p>제4조(전문위원) ①----- ----- -----,----- <u>5급상당</u> ----- -----</p> <p>②, ③(현행과 같음)</p>